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 11. 29 선고 2022가단5391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효영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2. 11. 15.

판 결 선 고 2022. 11. 29.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2020. 5. 1.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11.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군법원 2004가소5164호로 “B은 원고에게 22,774,334원 및 그 중 18,530,996원에 대하여 2004. 5.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8. 28. 전주지방법원 2014차전8580호로 “B은 원고에게 70,014,210원 및 그 중 18,500,000원에 대하여 2014.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C(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20. 5. 1. 사망하여 자녀인 피고, B 등은 그 상속인이 되었다.

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인의 소유였는데,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0. 5. 1.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20. 7.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바. 원고의 2020. 5. 1. 및 현재 B에 대한 채권의 원리금은 70,014,210원을 초과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D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채무초과 상태인 B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은 그 당시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중 B 상속분인 1/5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B의 채무에 대하여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망인을 부양하고 치료비를 지출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이 반복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또한, B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2003. 8. 29.경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B을 상대로 2004. 11. 25. 제1의 가.항 기재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이와 같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원고가 다시 B을 상대로 위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8. 28. 제1의 나.항 기재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사실에다가 지급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그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점을 더해 보면,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판결 및 지급명령에 의하여 각 중단되어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결국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상범

목 목

1. 전라북도 익산시 대 625㎡

2. 전라북도 익산시

[도로명주소]전라북도 익산시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66.4㎡

시멘트블록조 스테이지붕 단층 주택 12.8㎡

시멘트블록조 스테이지붕 단층 주택 34.7㎡

